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

(대표발의 : 허정행 의원)

의 안 번 호	16-122
--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. 11. 23.

발 의 자 : 허정행 · 강희향 · 백남환

신종갑 · 유후렬 · 이동주

이필례 · 이학래 (8명)

1. 제안이유

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마포구민이 그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마포구가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자발적인 재능기부 활성화의 기본이념과 재능기부의 정의를 규정함
(안 제2조 및 제3조)
- 나.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을 구분함(안 제4조)
- 다.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및 재능기부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(안 제5조)
- 라. 재능기부의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등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함 (안 제6조)
- 마. 재능기부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,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7조)
- 바.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8조)

3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및 제22조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 및 제18조

4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6. 11. 25. ~ 2016. 11. 30.(의견제출 없음)
- 다. 조례안 : 불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·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-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·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
-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
-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재능기부”란 개인,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, 경험,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“문화예술”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및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.

제4조(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) 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국가 기술 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
 - 해당분야 현장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경우
- 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법률 분야 : 노무, 세무, 행정 등
- 의료 분야 : 의료, 보건, 건강관리 등
- 문화예술·체육 분야 : 공연, 전시, 연주, 행사,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

도 등

4. 전문기술 분야 : 건축, 토목, 디자인, IT, 재무, 회계, 경영, 인사 등
5. 사회복지 분야 : 보육, 상담, 간병 및 가사지원 등
6.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

제5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,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제6조(재능기부사업 추진)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
2.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
3.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· 육성 · 지원 사업
4.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

제7조(포상)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령

「지방자치법」

(시행 2015.6.4.) [법률 제12738호, 2014.6.3., 타법개정]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「문화예술진흥법」

(시행 2016.2.3.) [법률 제13962호, 2016.2.3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문화예술”이란 문학, 미술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韻文),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.
2. “문화산업”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·제작·공연·전시·판매하는 것을 업(業)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문화시설”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
 - 나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
 - 다.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
 - 라.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
 - 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4. “문화이용권”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·전시·영화·도서·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.

- 이하 같다)된 증표를 말한다.
-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.

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

(시행 2015.6.4.) [법률 제12738호, 2014.6.3., 타법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8조(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

조례 제 538호(2003. 5. 6..제정)

제12조(자원봉사단체의 지원)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학교·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)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·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·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.
④ 학교·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.

제15조(포상)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, 자원봉사단체,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